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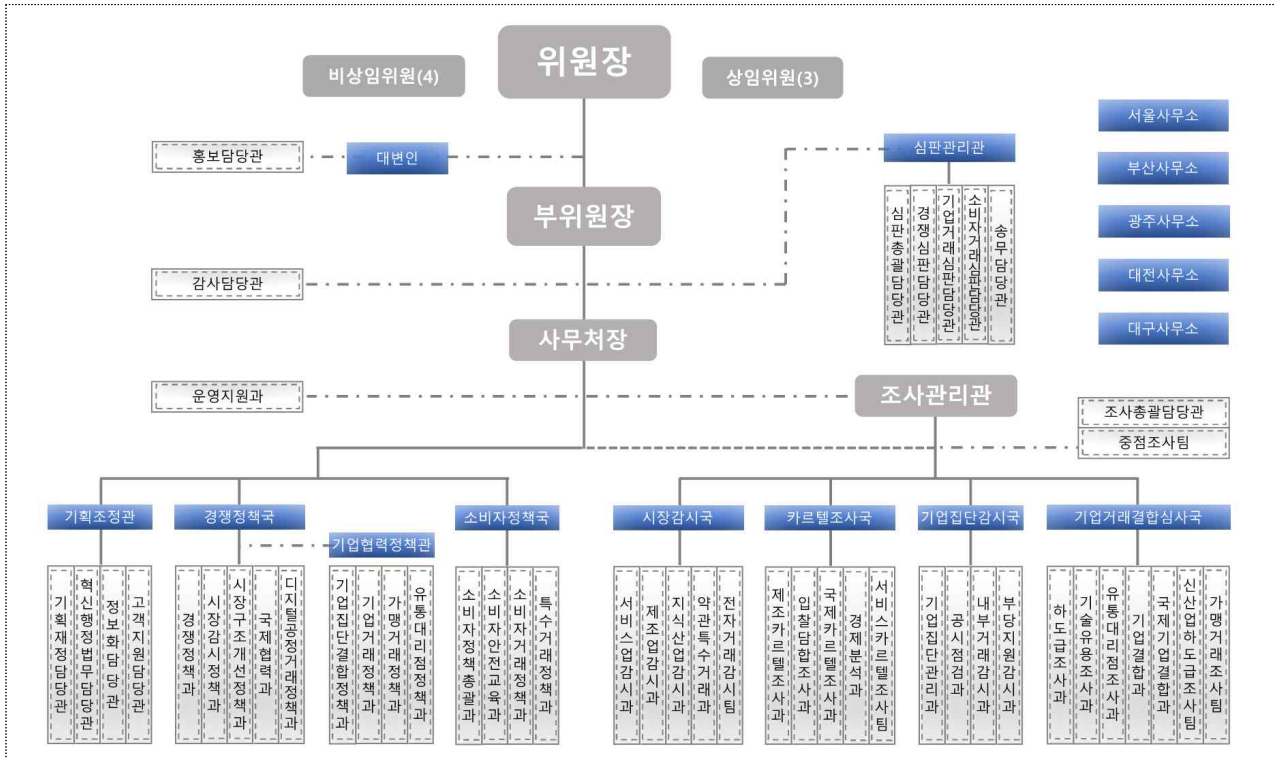
#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

---

2025. 12. 19.

# I. 일반현황

## 1 기구 및 조직 현황 (2025. 12. 2. 기준)



## 2 인원 현황 (2025. 12. 2. 기준)

구분	직급별	계	정무직								기타
			정무직	고공단	3.4급	4급	4.5급	5급	6급이하		
합계	정원	647	2	16	12	36	48	222	311	-	
	현원	646	2	15	12	40	40	232	305	-	
본부	정원	483	2	15	12	31	43	182	198	-	
	현원	489	2	15	11	35	33	197	196	-	
소속기관	정원	164	0	1	0	5	5	40	113	-	
	현원	157	0	0	1	5	7	35	109	-	

## 3 예산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2025 예산 (A)	2026년 예산 (B)	증감 (B-A)	(B-A)/A
세입 총액	539,426	609,684	70,258	13.0
세출 총액	163,370	189,199	25,829	15.8
1. 사업비	98,283	112,737	14,454	14.7
· 공정위	31,830	41,082	9,252	29.1
· 조정원	12,757	14,509	1,752	13.7
· 소비자원	53,696	57,146	3,450	6.4
2. 기본경비	8,935	11,729	2,794	31.3
3. 인건비	56,152	64,733	8,581	15.3

## Ⅱ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

### ① '25년 성과 및 보완점

#### □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핵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

##### ○ 「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」 발표(11.21)

- 하도급대금을 제때 제값 받는 거래환경 구축을 위해 지급보증기관·발주자·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\* 구축·강화 방안 마련

\*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(12.3) 통과

##### ○ 「기술탈취 근절 대책」 발표(11.4)

- ▲기술탈취 집중 감시체계 확립, ▲법집행 강화, ▲피해기업 증거확보·입증부담 완화, ▲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방안 마련\*

\* 중기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(11.4) 및 수사 직권조사 확대, 私인의 금지청구제 도입(9월) 등

##### ○ 「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」 발표(9.23)

- 가맹점 창업·운영·폐업 쉰 과정에서 가맹본부-점주 간 <sup>창업</sup>창업안정성 강화, <sup>운영</sup>운영점주 협상력 제고\* 및 <sup>폐업</sup>폐업한계점주 폐업자율성 보장 방안 마련

\* 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(12.11) 통과

⇒ (보완점) 기발표한 대책은 조속히 추진하되 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근본적 개선 필요

#### □ 민생부담 완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

##### ○ 국민생활 밀접 품목 및 산업 중간재 분야 담합행위 적극 시정

[통신]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조정 담합(과징금 963억)

[주택] 내발주 건설감리 담합(과징금 237억), 물탱크 입찰담합(과징금 20억)

[가구] 공동주택 빌트인·시스템가구 입찰담합(과징금 420억)

[중간재] 스테인리스스틸, 아연도금철선 담합(과징금 99억)

○ **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 집중 처리**

[배달앱] 전담TF 운영(5~11월)을 통해 주요 사건(최혜대우요구, 끼워팔기, 자사우대 등) 조사 완료  
[숙박앱] 야놀자·여기어때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 제재(과징금 15.4억)  
[생활밀착] 웨딩플래너 거짓·과장 광고, 산후조리원·헬스장·모바일상품권·은행 불공정약관 점검

○ **새로운 분야 소비자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**

[그린 워싱] 무신사 등 4개 의류 판매업자의 친환경 관련(에코레더) 부당 광고 제재  
[AI 워싱] 실태조사 실시 및 의심사례(20건) 시정 조치 완료  
[다크 패턴] OTT·음원구독, 쇼핑 분야 등 다크패턴 의심사례 시정(45건)

○ **민생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 개선**

-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 「식품분야 용량표수 대응방안」 발표(12.2)
- 결혼·체육 분야 등에서의 **중요정보\* 소비자제공 의무화**(중요정보고시 개정, 11월)
  - \* 결혼서비스 세부 가격정보 및 환불조건, 요가, 필라테스 교습소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
-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**책임·역할 강화**(전자상거래법 개정, 12월)\*
  - \*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간 분쟁 해결 기구 설치·운영, 이용후기 조작 방지 책임 강화 등

⇒ **(보완점)**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,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**실효적 구제방안 마련**

□ **혁신·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 반칙행위 제재·경쟁제한적 규제 개선**

○ **구글·알리·테무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칙행위\*를 적극 시정**

\* (구글)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관련 분리 요금제 출시(동의의결)  
(알리·테무) 부당한 표시·광고 제재, (메타)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

○ **총수 2세 회사 지원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 행위 및 파생상품을 활용한 부실계열사 지원 행위 등 제재(총 3건, 과징금 총 729억원)\***

\* 추가 5건 안건상정 完

○ **AI·ICT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총 22건 개선\***

\* AI기술 관련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, 캠퍼지의 플랫폼 통한 타인대여 허용,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확대 등

⇒ **(보완점)** 반칙행위에 대한 **실효적 차단**을 위해 **감시 및 제재 강화** 방안 마련 필요

☞ **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성장하고 혁신에 몰두하는 시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엄중한 감시와 제재 실효성 및 법집행 역량 강화 필요**

## ② 대내외 여건 분석

- (경제상황) 완만한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, 對美 통상이슈 및 물가상승 등 대내·외 불확실성 상존
  - AI, 반도체,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, 케데헌을 비롯한 K-콘텐츠 등 한류 확산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
  - 다만, 원자재·가공식품 등 소비자물가 상승\*, 고환율 지속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
    - \* [11월 소비자물가, 국가데이터처] 석유류 5.9%↑, 농축수산물 5.6%↑ 등
- (경제구조) ‘대기업 - 중소기업’, ‘플랫폼 - 입점 소상공인’ 등 경제 주체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 지속
  - 중소기업, 소상공인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,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빈번
    -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은 소상공인 매출 증가의 마중물이 되었으나, 근본적인 구조적 불균형 보정이 긴요
  -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,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혁신동력 저하 등의 문제도 치유할 필요
- (국민기대)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 역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한층 높아진 상황
  - 정책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투명한 법집행 체계를 확립할 필요

👉 경제주체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 
「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」 정책방향 수립

비전

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

핵심  
과제

대·중소기업 간  
힘의 불균형 해소

- ▶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
- ▶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체계 강화
- ▶ 갑을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

민생 밀접 분야  
공정경쟁 확산

- ▶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 시정
- ▶ 불공정 피해구제 시스템 외연 확장
- ▶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

디지털 시장  
혁신 생태계 조성

- ▶ 디지털 분야 등의 시장 환경 개선
- ▶ 디지털 소비 환경 개선

대기업집단 규율과  
혁신 인센티브

- ▶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·제재 강화
- ▶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 강화
- ▶ 첨단전략·벤처산업 투자 활성화

추진  
기반

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

- ◆ 사건처리의 신속성·투명성 제고
- ◆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

### Ⅲ. 중점 추진과제

#### 1 대·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

##### ①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국정과제 64, 67

- (하도급)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여건 조성
  - 안정적 대금 수령을 위해 ①지급보증 의무 확대(12.3 법사위 통과), ②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강화, ③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
  - 납품대금-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‘주요원재료’에서 ‘에너지비용’까지 확대하고 (12.3 법사위 통과), 주요 탈법행위 유형(쪼개기 계약 등)도 하도급법에 명시·집중점검
  -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추가비용이 발생시 하도급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(원청의 성실한 협의 거부시 시정명령·과징금 고발)
  - 산업재해 빈발 분야의 안전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및 AI 인프라 관련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집중 점검
- (가맹) 가맹점의 안정적 창업·폐업 기반 마련 및 신유형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등 가맹점주 권익강화
  - 신속한 창업정보 제공, 점주 계약해지권 구체화 등 창업·운영·폐업 **순 단계별 제도 개선**(가맹사업법·시행령·고시 개정)

##### <가맹 분야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>

(창업) 창업안정성 강화	(운영) 점주 협상력 제고	(폐업) 한계점주 폐업자율성 보장
-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- 정보공개서 내용체계 개편	-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- 점주단체와 협의 의무화 (미협의 가맹본부 제재)	- 점주의 계약해지권 구체화 - 위약금 정보 제공 강화

-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신유형 판촉수단 도입을 통한 비용 전가 행위,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 집중 조사
- (유통) 납품 대금 관련 제도 개선 및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을 통해 중소 납품업자의 고충 해소
  - 중소납품업자 피해예방·자금유동성 개선을 위한 대금지급기한 단축 (대규모유통업법 개정)\*
  - \* (25.12월) 직매입·특약매입 등 거래방식 특성에 맞게 대금지급기한 단축안 발표 → (26년) 대규모유통업법·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화(적용예외사유 등 세부기준 마련)
  - 대형마트 등의 대금 지연지급, 상품대금 부당감액 등 감시 강화

## ② 甲乙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체계 강화 국정과제 67

-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직권조사 확대 및 제도 개선
  -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하여 기술탈취 직권조사 대폭 확대
  -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증거확보·입증부담 애로 해소(하도급법 개정)\*
    - \* ▲전문가 사실조사·자료보전명령·법정의 진술녹취 등 '한국형 증거개시제도(디스커버리)' 도입
    - ▲공정위 조사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, ▲가해기업에게 구체적 행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여
  - 중소기업 기술자료·비밀보호 인식개선·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·교육 강화
- 익명제보센터 강화를 통한 갑을(甲乙) 분야 감시 강화
  - 제보기업이 특정되지 않도록 접수단계부터 제보자 익명성 보장\*을 강화하고, 조사 단계에서도 넓은 범위로 조사(예: 협력사 전반 직권조사) 실시
    - \* 제보사이트 접속시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, 제보자의 아이피(IP)주소가 저장되지 않도록 하여 신원 노출 방지
  - 하도급(기술탈취 포함), 유통·대리점, 가맹 분야의 익명제보 사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경험많은 조사관 중심으로 전문조사팀을 운용

## ③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 국정과제 67

- 경제적 약자들의 단체행동 보장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 재설계
  - (중소기업·소상공인)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對대기업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 등 적용제외 검토\*
    - \* (예) 소규모사업자들의 단체협상을 위한 거래조건 협의, 공동의 거래거절 등
  - (노조 등) 노동자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노동자·노무제공자·노동조합 등을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 검토(의원입법안 기발의)
  - ※ 제도개선 TF 운영(26년 상반기 중 법개정안 등 개선안 마련, 하반기 법개정 추진)
- 가맹점주·하도급기업·대리점주 등의 거래조건 협상력 강화
  - 가맹본부-가맹점주간 대등한 협상을 위한 협상권 보강 및 대리점주·하도급기업간 결속 강화를 위한 단체구성권 부여\*
    - \* (가맹사업법) 점주단체 공적대표성 부여를 위한 등록제 도입 점주단체외의 협의 의무화(미협의 제재)(대리점법·하도급법) 단체 구성·가입·활동 등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·원청기업의 불이익 제공 금지 등

## 2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

### 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 시정

#### □ 가격담합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

- 식품 등 민생밀접 4대 분야(식품, 교육, 건설, 에너지 등) 담합 집중 점검  
-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처리 전담팀을 운영하여 신속 조사

#### < 4대 중점 점검 분야 >

식품	▶ 설탕, 밀가루, 계란 등
교육	▶ 학습기기, 교육시설, 인쇄용지 등
건설	▶ 공동주택 신축공사, 가스배관, 신축아파트 도배 등
에너지	▶ 바이오연료, 윤활유 등

- 장기간·관행화된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부과 외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등도 적극 검토

#### □ 불공정행위 제재의 합리성·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

- 불공정거래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·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,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(강제조사권 도입 등)도 검토
- 독과점 사업자들의 가격남용 행위가 실효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공정 거래법령상 위법성 요건 합리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

#### □ 가격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의 분석 강화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

- (시장분석) 국민생활 밀접 독과점 품목 중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\*에 대해, 독과점 시장구조 및 고물가 원인 심층 분석

\* (예) 병과, 식용유, 영화관, OTT스트리밍

- (농산물유통) 출하자의 거래방식 선택권 확대 및 시장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산물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
- (주정유통) 주류제조사의 주정구입 자율성 및 주정제조사 간 경쟁을 제한하는 주정도매업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

□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사소송 활성화

- (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) ▲단체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, ▲예방적 금지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(소비자기본법 개정)
  - 단체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제도설계 방안 등도 마련
- (자료제출명령제 확대)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이 경감되도록 법원의 피고(가해기업) 및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 확대 도입\*
  - \* (당사자 자료제출) 공정거래(담합·불공정)·하도급 → 공정거래(수 위반행위)·가맹·유통·대리점으로 확대 (공정위 자료제출) 비밀엄수의무를 면제하고, 법원 명령 시 공정위 처분 관련 보유자료를 소송에 제출
- (사인의 금지청구제 확대)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가맹·유통·대리점 분야에 확대 도입\*
  - \* (現) 공정거래법(20.12월)·하도급법(25.9월) 도입 → (改) 가맹·유통·대리점법으로 확대

□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

- (분쟁조정 활성화) B2B 분쟁조정 효율성·실효성·신속성 제고를 위해 ‘공정거래분쟁조정법’ 제정\*
  - \* ▲간이조정절차 도입, ▲감정·자문제도 도입, ▲집단조정 확대 ▲공정거래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
  - 소액사건 단독조정절차 도입, 조정 불성립 분쟁에 대한 소송지원 관련 법적근거 마련 등 B2C 분쟁조정 제도도 정비(소비자기본법 개정)
- (소비자원 역할 강화) 소비자원이 유사·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일괄 구제방안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소비자기본법 개정)
  - 구제방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

□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조성(공정거래법·국가재정법 개정)

- 불공정행위에 부과·징수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하여 소비자·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회복 도모\*
  - \* 법안(공정거래법, 국가재정법) 기발의(25.9월) → 법률개정(26년) → 기금 조성(27년~) 추진

- (청·장년층) 문화·건강·AI 상품 등 일상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 방지
  - (문화·상업활동) 공연·스포츠 티켓예매, 음식점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 점검 및 식당테크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·표준약관 제정\*
    - \* 음식 주문 키오스크(Kiosk) 서비스 관련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합리화 등
  - (운동) 요가·필라테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\* 등 제도 개선
    - \* 교습 내용 및 세부 가격정보 계약서 표시, 교습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기재 명확화, 교습소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기재 등
  - (AI 상품) 유료 AI 서비스 등 구독경제 분야의 구독권 갱신·해지 관련 다크패턴, AI 탑재 제품 관련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 등 점검

- (노년층) 상조업체 선수금 사금고화 방지 등 상조·장례 분야 제도 개선
  - (상조) ▲선수금 운용규제 강화, ▲사업자 책임경영 유도, ▲공제조합 감독 강화 등 할부거래법 전면 개편(할부거래법 개정)\*
    - \* 선수금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과도 구체적 협력방안(MOU 체결 등) 마련

**<상조분야 주요 입법과제 (발의완료)>**

구분	주요 입법과제
선수금 운용규제 강화	▲지배주주 대상 신용공여 제한 ▲부당한 내부거래 금지
사업자 책임경영 유도	▲준법기준 마련 ▲준법관리인 도입 의무화
공제조합 감독, 사업자 법집행 강화	▲공제조합 범위반 시 설립인가 취소, 과태료 부과근거 등 마련 ▲영업정지 대상 사업자 금지행위 확대

- 본인 및 고인(故人)의 가입정보(납입금액·보상가능금액 등) 조회, 피해보상 처리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플랫폼도 구축 및 운영
- (장례) 장례식장의 ▲외부 음식(케이터링 등) 반입금지, ▲화환 임의 처분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약관 개정

### 3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

#### 1 디지털 분야 등의 시장 환경 개선

-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·불공정행위 적극 감시
  - 독점이 고착화된 디지털 시장에서의 근원적인 반경쟁 행위\* 조사·시정
    - \* 모바일·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의 거래상대방 불이익 제공, AI 및 클라우드 분야로의 시장 지배력 전이 등 점검·시정
  - 배달앱·대리운전 분야\* 등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
    - \* [배달앱] 최혜대우요구·끼워팔기·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약관 등 각종 불공정 행위 개선 [대리운전] 대리기사에 과중한 비용부담 현황(이중 보험 가입 등) 점검 및 관행 개선 유도
- 방위산업, AI 활용 산업 등 신성장산업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
  - (방위산업) K-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활성화 및 진입장벽 완화
  - (AI 활용 산업) 돌봄\*, 안전\*\* 등 AI 접목 시 혁신 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발전 및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
    - \*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규제 개선을 통한 AI기반 돌봄 로봇 활성화 등
    - \*\*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기준 개선을 통한 AI기반 화재예방 원격제어시스템 도입 등
- 플랫폼-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·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디지털시장 입법논의를 지원
  -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, 일관된 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와도 충실히 소통
- 신속·면밀한 기업결합 심사·집행을 통한 혁신·경쟁 생태계 구축 지원
  - (구조전환 지원) 석유화학·철강 등 산업 구조조정 M&A를 신속·면밀하게 심사하여 중소기업·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, 효과적인 산업 재편을 지원
  - (혁신 촉진) 빅테크·가상자산 플랫폼 등 혁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M&A 심사를 통해 경쟁제한을 예방함과 동시에 혁신성장을 뒷받침
  - (소비자권익 보호) 항공분야 M&A 시정조치 등에 대한 엄정한 관리로 항공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고 운임 인상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

## ② 디지털 소비 환경 개선

### □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적극 대응

#### ○ AI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

- (제도정비) ▲AI 악용 광고\* 관련 ‘가상인물’ 표시 누락 행위를 기만적 광고로 규정, ▲AI 활용 광고시 구체적 표시방법 등을 규정(고시 개정)

\* AI가 생성한 가상의 전문가가 특정 제품의 성능을 홍보하는 형태의 광고

- (모니터링) ▲SNS 광고 모니터링 범위를 AI 악용 광고로 확대\*하고, ▲소비자원의 AI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차단 체계도 강화\*\*

\* (現) 뒷광고 → (改) 뒷광고 + AI 악용 광고

\*\* (現) 유튜브에 차단 요청 → (改) 다양한 플랫폼(메타 등)으로 확대

#### ○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가격표시 왜곡 관행 등 개선

- 종합·전문 쇼핑몰(화장품, 뷰티디바이스 등)에서 할인율\*·성능·업계 순위, 쿠폰 할인 혜택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부당 표시·광고 조사·시정

\*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종전 거래 가격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

#### ○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관련 불공정 이용약관 점검

### □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(전자상거래법 개정)

#### ○ (플랫폼의 책임 강화)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 확대\*

\* (예) ①플랫폼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동시 입점업체(판매자)와 연대책임, ②플랫폼의 업무 수행 중 피해발생 시 플랫폼이 단독책임, ③플랫폼이 대금수령시 환불책임 부담

#### ○ (규율대상 거래 확대)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통한 인접거래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제\*를 적용

\* 판매자 신원확인, 소비자 불만·분쟁해결 조치 등 통신판매중개자 의무

#### ○ (제재기준 정비) 법 위반 억제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를 허위·과장·기만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

## 4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

### 1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·제재 강화 국정과제 64

- 부당내부거래 및 계열사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
  - (부당내부거래) 총수일가 승계·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몰아주기,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, 금융·민생밀접(식품, 의료 등) 분야 집중 감시
  - (계열사 누락) 총수의 자금 조달,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위장 계열사 등을 활용하는 행위(고의적 계열사 누락 등) 엄정 조치
  
-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
  - (부당내부거래) 자연인(총수일가)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등\*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방식 등 개선(공정거래법 시행령 고시 개정)
    - \* (예) ▲사업기회 제공에도 정률과징금 부과("관련매출액"을 "거래제공규모"로 변경), ▲정액과징금 상향 등
  - (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) 대기업집단 규율\*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(공정거래법 개정)
    - \* ▲상호순환출자 금지, ▲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(공정거래법 제36조)
  -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자료 제출의무 관련 반복적 범위반역제를 위해 고발기준 구체화\*(고시 개정)
    - \* (예) 현행 고발지침의 판단기준에 반복적 의무위반 횟수 등 추가
  
- 기업집단포털 및 공시 개선을 통한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반 확대
  - (기업집단포털) 시장감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고 기존 정보도 재구성(집단·회사연도별 비교 등) → 기업집단정보 원스톱 서비스 제공
  - (공시) 계열사 간 투자자산(부동산 등) 거래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드러나도록 공시양식 재편 → 다양한 형태의 내부거래를 일괄 감시할 수 있는 체계 마련

## ②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 강화 국정과제 64

-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를 위한 **규제대상 기준 개선**(공정거래법 개정)
  - 사익편취 규제 대상\* 지분을 판단 시 **자사주 제외**
    - \* ▲총수일가 + ▲총수일가 20%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 + ▲그 계열사의 50%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
- 건전한 지주회사 체제 유도를 위한 **지주회사 제도 보완**(공정거래법 개정)
  - 지주회사 체제 내 **중복상장 유인을 축소\***하여 **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일반주주 권익 보호, 편법적 지배력 확장 방지**
    - \* (現)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을 상장 30%, 비상장 50% → (改)신규 중복상장시 50%로 유지

## ③ 첨단전략·벤처산업 투자 활성화

-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 특례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,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**안전장치 마련**
  - **공정위 사전심사·승인 등 안전장치 및 지방투자를 전제로 반도체 분야 증손회사 의무지분을 완화(100→50%) 및 금융리스업 허용**

### <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 특례 주요 요건 >

구분	내용
심사승인	특례 적용 시 공정위 사전심사·승인, 5년 주기로 연장 여부 재심사
특례대상	손자·증손회사 모두 반도체 부문 첨단전략산업기업 ※ 증손회사가 손자회사에 반도체 설비를 공급하는 경우 포함
출자요건	증손회사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를 받을 것
지방투자	증손회사의 본점 및 주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 ※ 단,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 소재시, 첨단산업기금 출자금액 이상을 비수도권에 투자하기로 확약
상장금지	중복상장 방지를 위해 증손회사의 국내·외 상장 금지
금산분리	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외 다른 금융·보험업 영위 금지

- **일반지주회사 CVC의 벤처투자 규모 확대 및 글로벌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부출자·해외투자 비중 규제 완화**(공정거래법 개정)
  - 펀드별 외부출자 비중 40%→50%, 총자산 중 해외투자 비중 20%→30% 상향

## 5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

### 1 사건처리의 신속성·투명성 제고

- 민생경제(중소기업·소상공인) 회복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(167명 증원)
    - (본부) 하도급·가맹 등 민생사건 조사인력(+75명)과 경제·데이터분석 인력(+23명) 및 심의보좌 인력(+19명)을 확충하여 신속히 사건 처리
    - (지방) 現서울사무소의 과대한 관할(서울·경기·인천·강원)을 조정하여 경인 사무소(경기·인천 관할)를 신설(+50명)하고 수도권 민생 신고·민원 적시 대응
- ⇒ 직권조사 확대를 통한 범위반 억제력 강화 및 사건처리 기간 단축

- 지역 현장의 불공정행위 신속 처리를 위해 하도급법·가맹법·표시광고법 위반 중 일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·시정권고 부과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

법률명	(예) 지방정부 위임·위탁 가능 대상 행위
하도급법	▶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미공개, 내국신용장 미개설, 관세 환급액 미지급
가맹사업법	▶ 정보공개서 공시의무 위반(미공시, 허위공시 등)
표시광고법	▶ 결혼서비스업, 체육시설업의 중요사항 표시·광고 의무 위반

- 사건처리 쉼 단계별(접수-조사-심의)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
  - (접수) ‘민원처리 전담팀’을 설치·운영하여 1차적 민원 필터링 기능 강화
  - (조사) ‘주요사건 신속처리팀’ 운영을 상시화하여 주요민생 사건 집중 처리
  - (심의) 비상 심의체제 가동 및 심의 개최 횟수 확대 등을 통해 심의기간 단축\*
    - \* ▲부위원장 주재 소회의 운영, ▲주 1회 → 주 2회 소회의 개최, ▲서면심의(약식) 확대 등

-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및 알 권리 제고

- (이의신청 법제화) 신고인이 심사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심사관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(공정거래법 개정)\*
  - \* (現) 사건절차규칙 등 지침을 통해 이의절차 운용 중 → (改) 공정거래법상 명문화
- (의견청취 확대) 신고인도 일정한 요건 하에 사건 심의 前 실시하는 의견청취절차\*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인 의견수렴 확대(고시 개정)
  - \* (現) 주심위원 등은 직권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의견청취절차 실시

---

---

## ②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

---

---

□ 공정거래 관련법상 경제적 제재가 범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개정과 과징금 체계의 개편\*

\* 「과징금 제도개선 TF」 구성·논의('25.11월~)

① (반복 범위반 가중 강화) 효과적인 반복 범위반 억제를 위해,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% 가중,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% 가중되도록 개선(과징금고시 개정, ~'26년上)\*

\* (과징금 가중) 1회 반복 시 [韓] ~20%, [日, EU 등] 50%

② (중대성 기준 재설정)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 개선(과징금고시 개정, ~'26년下)

③ (과징금 부과율 상향)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해외 선진국 대비 과징금 수준이 낮은 행위\*를 중심으로 그 상한(정률과징금)을 현실화

\* (시지남용 과징금 한도) [韓] 관련매출액의 최대 6%, [日] 10%, [EU] 30%

-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 시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공정거래법, 갑을관계 4법 등 모두 대폭 상향(공정거래법 등 개정, ~'26년上 개정안 발의)

④ (부과체계 전면개편) 더욱 실효성 있게 불공정거래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추진 (~'26년)

-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 개선 등 주요 검토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방안 초안 마련 후, 전문가·이해관계자 집단으로 구성된 TF에서 논의 후 확정·발표 추진\*

\* 관련매출액 대비 부과율 상한을 적용해도 법 위반 억제에 미흡할 경우 추가 가중 등 (예: EU는 범위반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필요 시 '기업 총 매출액의 10%까지 부과 가능토록 운영)